행정안전부	보 도 자 료	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/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보도 일시	2022. 4. 14.(목) 12:00		
담당 부서	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	책임자	과 장 김정훈 (044-205-4210)
		담당자	주무관 신희승 (044-205-4218)

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은 필수입니다

- 행안부, 2022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-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전해철)는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**'2022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(이하'안전교육사업')'**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.

□ '해인이법'으로 알려진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*」(약칭 : 「어린이안전법」)에 따르면, **어린이집·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**의 관리 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**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**하여야 한다.

○ 다만, 일부 **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시설은 교육비가 부담**되어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.

*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('16.4월)을 계기로 제정·시행('20.11.27.)

□ 이에 행정안전부는 교육 대상 기관 중 **'정원 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'과 '읍·면에 소재한 민간시설'에 종사하는 약 7만 명**에게 **무료 교육을 지원**할 계획이다.

○ 안전교육은 총 4시간으로 **이론(2시간)과 실습(2시간)**으로 진행되며, ▲응급상황 행동요령, ▲주요 내·외과적 응급처치 이론, ▲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**응급처치 실습 교육** 등으로 이뤄진다.

- **실습 교육**은 코로나19 방역규제 상황을 고려하여 **당분간 비대면 쌍방향 교육방식을 통해 진행**되며, 향후 **방역규제가 완화되면 대면교육으로 전환**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.

○ 교육은 공모로 선정된 전문기관(한국보육진흥원)에서 교육자료 개발 및 전문 강사 확보 등 준비기간을 거친 후 진행된다.

○ 교육 신청을 원하는 시설 또는 종사자는 **한국보육진흥원**(www.kcpi.or.kr) 누리집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.

《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(이론+ 실습)》





□ **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**은 “어린이는 신체적·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,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**사회구성원 모두가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**가 있다”고 강조하면서, “**사례 중심의 응급조치 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**하겠다”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1 **2022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**

□ 추진 배경

○ 「어린이안전법」 제정·시행('20.5., '20.11.)에 따라 **어린이 이용시설*** **종사자**의 '어린이안전교육(**응급처치교육**)' **이수**가 **의무화**됨

- **어린이안전교육 의무화 홍보**와 어린이집, 학원 등 **소규모 민간시설**의 **교육비용 부담 완화**를 위해 교육사업 추진('21년~)

*** 어린이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 이용시설**

o 법률 규정 : 12개
- ①어린이집, ②유치원, ③초등학교, ④특수학교, ⑤학원, ⑥아동복지시설, ⑦대규모점포, ⑧유원시설, ⑨전문체육시설, ⑩공연장, ⑪박물관, ⑫미술관

o 시행령 규정 : 10개
- ①외국교육기관, ②과학관, ③공공도서관, ④사회복지관, ⑤유아교육진흥원 등, ⑥장애인 거주시설, ⑦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, ⑧국제학교, ⑨외국인학교, ⑩대안학교

□ 주요 내용

○ **(지원범위) 소규모 민간시설* 중 일정 기준**에 해당하는 시설**별 종사자 교육 수요에 따라 **무료교육 지원(약 7만명)**

* 어린이집, 학원, 아동복지시설, 공공도서관, 사회복지관, 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

** ①정원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, ②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소도시(읍·면지역) 우선 지원

○ **(교육내용)** 응급상황 행동요령, 주요 내·외과적 응급처치이론·실습 등

○ **(교육시간)** 4시간(실습 2시간 포함)

○ **(교육방법)** 코로나19 상황을 고려, **비대면 교육(쌍방향 소통방식) 실시**

※ 교재·교구를 미리 전달하여 실습교육 효과성 제고, **방역규제 완화 시 대면교육 전환**

○ **(사업방식)** 공모로 선정된 전문기관(한국보육진흥원)에 위탁 실시

※ (계약금액/기간) 1,954백만원 / '22.4월~12월

붙임2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주요내용

□ **법적 근거**: 어린이안전법 제16~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

□ **세부 사항**

구분	세부 사항
교육대상	▪ **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*** *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응급조치 수칙 수립 및 교육 담당 ▪ 어린이와 **대면 업무**를 수행하는 자 중 교육·보육·상담·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 수행자
교육시간	▪ **매년 4시간 이상**(실습교육 2시간 이상 포함)
교육장소	▪ **교육기관 강의실**(연면적 60㎡ 이상)에서 안전교육 시행 ▪ 교육기관 외 장소에서 **출장 교육** 가능(교육기관과 같은 요건 유지) ※ 교육기관에서 실습도구를 보내주고, 온라인으로도 실습 진행 가능
교육내용	▪ 응급상황 행동요령 ▪ 주요 내·외과적 응급처치이론 ▪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등
교육기관	▪ **행정안전부에서 지정**받은 **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** (**'22.3월말 기준 111개 기관**)에서 이수 ※ 보건소, 소방서 등 국가,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인정
교육강사	▪ **안전교육의 적정 수준 확보**를 위해 전문인력 요건 규정 ▪ 전문강사*, 보조강사, 사무전담 각 1명 이상 * **의사, 간호사·응급구조사**(경력 2년 이상, 2급 구조사의 경우 3년)